

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제109조 (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111조 (지분의 양도·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名義改書)를 받아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출자금의 감소 절차

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⑤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12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한도

4. 보증수수료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7.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4.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제113조 (보증한도)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총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 재평가를 마친 때의 총출자금과 준비

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공제조합이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14조 (조사 및 검사)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자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115조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4.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5. 법 제83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7. 제9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제117조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 [[시행일 2016.5.19]]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의 접수

- 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 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 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 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 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4.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 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
  -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 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의 관리
  - 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감리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 다.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 라. 제45조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 10.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 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사항
- 1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
    - 나.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관리
  - 다.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
- 12의2.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운영
  - 13.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 14.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확인·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무

②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 [[시행일 2016.5.19]]

제1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제119조 (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내용 및 면제의 기준: 2014년 5월 23일
2. 제44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2014년 5월 23일
3.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및 수립절차: 2014년 5월 23일
4. 제91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 2014년 5월 23일

## 제8장 벌칙

제120조 (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
2. 지하도
3. 활주로
4. 삭도(索道)
5. 댐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계류시설(繫留施設)
7.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1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5.17]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989.5.1 제1269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1. 설계심사위원회규정

2.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

3.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3제3항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7조제5항 및 제7항,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각각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제7조제4항제2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단서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3호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항제3호중 "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건설공사시공감리에 대한 경과조치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설계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전의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이 경우 품질시험대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

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주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1990.4.14 제12979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생략

#### 부칙 [1992.5.30 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 부칙 [1992.12.26 제1379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시험대행자의 시험장비보유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부표 1 내지 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부칙 [1993.12.31 제14093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중 토목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토목감리전문회사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본다. 다만, 토목시공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공사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계약 또는 시공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전문회사가 합의하여 종전의 감리용이계약을 이 영에 의한 책임감리용역계약으로 변경·체결할 수 있다.

④(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로 본다. 다만, 당해 품질시험대행자는 이 영 시행당시 그가 보유한 기술인력중 다음 표의

개정전의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개정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전의 기술자격자	개정된 기술자격자
토목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부칙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08>생략

<109>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제7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4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의5,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4조의2, 제35조, 제47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2, 제54조의3제1항, 제54조의5,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59조의3제1항 및 제60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제7항 및 제48조제1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제3항, 제47조의3, 제47조의4제1항·제3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제6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0> 내지 <205> 생략

부칙 [1995.8.4 제1474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설

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중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94년 8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 30일 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 30일까지(최초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감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록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록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 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9.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52조제1항 제7호의2가록	2월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 제52조제1항 제7호의2나목	1월
1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법 제52조제1항	

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제7호의2다목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3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			
한 때			
○ 법 제59조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2월	
물이 포함된 공사의 품질시험 및 정기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		1월	
반한 때			
1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	법 제52조제1항	2월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의2라목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 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2월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제8호가목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1월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	제8호나목	
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 ·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법 제7조제1항	
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제8호다목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영업정지 3월
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한 때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위		영업정지 1월
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때	법 제7조제1항 영업정지 2월
+-----+-----+	+-----+

부칙 [1996.10.28 제15161호(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계란 앞에 전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의 건축의 기술사란중 "건축전기설비"를 삭제한다.

+-----+-----+-----+	+-----+-----+-----+
전 기   건 축 전 기 설 비	
+-----+-----+-----+	+-----+-----+-----+

별표 3의 비고 제1호중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전기·전기공사)"를 "전기(발송배전·전기기기·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전기·전기공사)"로 한다.

부칙 [1997.5.24 제15379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중 "지방해운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⑧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1997.7.21 제154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별표 3(검측감리원의 신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37조의2 및 제54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47조의5 내지 제47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자의 신고기간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제7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술자로 되는 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99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건설기술진흥기본

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경과조치) ①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의 주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중 학력·경력자가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기술분야 및 등급별로 교육훈련주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기존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1997.12.9 제15535호(측량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록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1997.12.31 제1556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21> 및 <22>생략

부칙 [1997.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2 제15614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1998.12.31 제16081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1999.1.21 제1608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9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1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②내지 <47>생략

부칙 [1999.2.1 제16094호(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④내지 ⑪생략

부칙 [1999.5.24 제16351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국립기술품질원 및 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 및 요업기술원"으로 한다.

⑬내지 ⑯생략

부칙 [1999.10.30 제1659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신기술의 지정등에 관한 제32조 내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제47조의2 각호의 기관 및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영 시행후 보유기술인력을 다른 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부칙 [2000.3.28 제1676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9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1.7.16 제17305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7.30 제1732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제52조제4항(종전의 제52조제2항)·제54조의10·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39조의5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점검의 대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1항제4호·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된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존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8조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은 검측감리원 및 초급감리원중 2002년 1월 1일 현재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사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정지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9.11 제17735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지방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12.5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8조의7제2항중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④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3.3.12 제1794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5조 제3항 및 제46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6.30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내지 <54>생략

부칙 [2003.12.30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55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 민원 처리를 위한 가석방자 관리 규정 등 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1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3.8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④ 내지 <2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6.30 제1893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13제1항, 제39조, 제46조의2제1항제4호·제4항 내지 제7항, 제57조,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계감리대상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설계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책임감리등의 용역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14 제18944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5.12.28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④ 내지 ⑫ <생략>

부칙 [2005.12.30 제1923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6호다목, 제32조 단서 및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입찰공고·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된 계약사무 및 법률 관계·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제5항, 제74조제3항제3호 및 제103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⑧ 생략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제85조제5항·제9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의2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 및 제90조제3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85조제5항·제9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제102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의3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제90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및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의 대형공사, 동항제2호의 특정공사”로 한다.

제38조의8제2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의11제5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로 한다.

제39조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 ⑩ 생략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2006.4.28 제1946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⑩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2006.5.25 제19483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중 “5급이상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12.29 제198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1조제1항제15호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책임감리등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종전의 별표 1 비고란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 중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다음 표에 의한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1호나 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동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그림생략]

④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란 다목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에 따라 신청한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표에 의한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본다.

[그림생략]

⑤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증목중 전자분야의 공업계측제어기사나 공업계측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기사나 지하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 본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2007.3.22 제1993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② 내지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5.15 제20049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달청 품질관리단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0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제7조제3항제2호나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9조제9호·제19조제2항제1호의 5 및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제54조의8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 및 학력 등을 2008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자 중 다음 표에 따른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제7조제3항제2호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9년 2월 28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그 교육을 이수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등급의 감리원으로 본다.

부칙[2008.0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0호, 제10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2호·제5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9조의6제3호, 제29조의7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2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4, 제35조제1항 전단,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7조의3제3항, 제38조의5제2항, 제38조의6제5항·제6항, 제38조의7제3항제3호, 제38조의9제2항, 제38조의10제3항, 제38조의11제3항, 제38조의12제3항, 제38조의13제2항·제4항, 제38조의15제2항, 제38조의18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38조의20제1항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 제39조의4제2항, 제39조의5제3항, 제39조의6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 제46조의4제1항제2호·제5항 전단·제7항, 제46조의5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46조의8제2항·제3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 제46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47조의2제1항제1호, 제4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7항 전단, 제47조의7,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3항, 제52조의3제1항, 제54조의8제2항 전단·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의9제1항, 제54조의10제3항, 제5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5조제2항·제4항 및 제6항 전단, 제58조제4항, 제59조제3항, 제59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

은 항 제3호의2 및 제4항, 제60조의2,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호·제4항 및 제5항, 제63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별표 1 제1호 초급기술자란·같은 호 비고란의 가록·나록 각 번호 외의 부분·나록(3) 및 다록, 별표 3 감사보고란·비고란의 가록·나록·다록 및 라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의2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4항, 제38조제5항, 제38조의20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2조제4항, 제45조제1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8항, 제46조의8제1항제6호,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1항제2호·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52조제1항제14호·제2항제15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및 제11항, 제52조의3제2항, 제55조제4항 및 제6항 후단, 제57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58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2항, 별표 5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제15호의3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10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농림부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 ⑦ 부터 <138> 까지 생략

####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

#### ② 부터 <22> 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2008.7.23 제209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8.9.18 제21020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61조제3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한국시설안전공단

### 6. 한국시설안전공단

####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08.12.9 제211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별표 7에 따른다.

부칙 [2008.12.24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부 칙[2009.3.31 제214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 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 칙[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③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 칙 [2009.11.26 제218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38조의5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2, 제12조제1항·제2항,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제4항·제5항, 제21조제5항제2호의2·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의”로 한다.

제99조제8항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 부 칙 [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3제5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측량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교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③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12.24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③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7.21 제22282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21조제5항제2호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38조의8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방식 제38조의8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 칙[2010.8.11 제2232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4항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10.14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1조제5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13 제225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제24조, 제36조, 제85조, 제112조, 제113조(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8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7조, 제129조, 별표 3 제1호 · 제3호, 별표 10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적용 성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준공하는 건설공사 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의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정 · 고시된 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 · 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에 대하여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 개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한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8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품질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장인증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6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 기준 등에 따른 적용례) 제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의 안전점검 의뢰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의 축소에 따른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15) · 19) 및 2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무적 책임감리 제외 대상 기관의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0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시공평가 대상 공사 범위 축소 및 시공평가 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준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품질관리자의 기본교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설기술자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제85조제2항 및 별표 3 제3호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교육을 면제한다.

제12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이 영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④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한다.

⑦ 신향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⑧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9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9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⑪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⑫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⑬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8)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로 하고, 같은 목(8)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6제4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의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9 또는 제38조의11”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또는 제62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부터 <39>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 칙[2011.2.14 제226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인증 사후관리 상태 조사의 주기 단축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공장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후관리 상태 조사는 제8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인증 또는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부 칙[2011.4.4 제22829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 칙[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으로 한다.

③부터 <47>까지 생략

### 부 칙[2011.9.15 제23134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바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방식”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을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한다.

#### 부 칙[2011.10.25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303조”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로, “「원자력법」 제2조제8호”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45조”를 “같은 법 제37조”로,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 ②부터 <21>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 부 칙[2011.11.1 제2328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 ②부터 ⑧까지 생략

#### 부 칙[2011.12.13 제233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감리원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算定)한다.

부 칙[2012.3.13 제236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받은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자재·부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착공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책임감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13 제239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 제19조제6항, 제20조제6항 후단, 제21조제6항 후단 및 제9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의 명단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 시행 당시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수로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사람은 별표 3 제1호에 따른 교육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환경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수립한 건설환경 기본계획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2013.2.20 제243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7호, 제19조제2항제5호, 제20조제3항제3호, 제21조제4항제5호, 제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7호, 제19조제2항제5호, 제20조제3항제3호, 제21조제4항제5호, 제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 제3항, 제8조제7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 후단, 제10조제6항 · 제7항, 제13조제1항 · 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20조제5항, 제21조제7항 단서,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 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4조제3호, 제3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 · 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6조제1항 전단 · 후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50조제8항,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5항 · 제6항, 제58조제3항제3호,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3항, 제63조제3항, 제64조제2항 · 제4항, 제66조제2항 · 제3항, 제69조제8항 · 제10항, 제7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2항, 제74조, 제75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7조제1항 · 제2항, 제80조제1항 · 제2항, 제84조제1호, 제85조제3항,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9조,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9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9조제6항,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6항, 제104조제2항,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20조제2항 제3호, 제121조제4항, 제122조제3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 제5항, 제130조, 별표 1 제1호 초급기술자의 학력 · 경력자란 마목, 같은 표 비고의 가목, 같은 표 비고의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표 비고의 다목, 별표 2 제3호라목, 별표 5 제1호라목, 별표 7 감리사보의 학력 · 경력자란 마목, 같은 표 검증감리원의 학력 · 경력자란 다목, 같은 표 비고의 가목, 나목, 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및 같은 표 비고의 마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30조제1항제9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항 · 제2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6항, 제50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1조제3항제3호,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0조제4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2항, 제8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단서, 제94조제2항, 제95조제8항, 제99조제1항제6호, 제102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 · 나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05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1항, 제106조제2항, 제11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20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4항, 제123조, 별표 3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8 비고의 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5항 본문 ·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5조제2항 본문 · 단서,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하며"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2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3.12.11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3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 ②부터 <20>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부 칙[2013.12.11 제24994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7호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4.1.14 제25086호]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1 제25238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6호 중 "품질관리단"을 "조달품질원"으로 한다.

부 칙[2014.5.22 제253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취소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7조(용역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기본설계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된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도 적용하되, 해당 건설공사가 이미 착공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리원

의 등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석감리사는 특급에, 감리사는 고급에, 감리사보는 중급에, 검측감리원은 초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한다.

제10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 · 훈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 훈련		
련		
건설   별표 3 제1호 나목1)	설계 ·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	별표 3 제2호 가목1)
기술자	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별표 3 제2호 나목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	별표 3 제2호 나목1)
	는 건설기술자	
품질   별표 3 제3호 나목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	별표 3 제2호 다목1)
관리자	설기술자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

제1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이하 "개정법률 부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7]

설계 등 용역업자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설계등용역 분야	
감리전문회사   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분야	
품질검사전문기관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검사 분야 중 해당 분야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이하 이 항에서 "설계 등 용역업자"라 한다),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항에서 "감리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이 항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각 전문분야별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1.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2. 감리전문회사: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3. 품질검사전문기관: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이하 이 항에서 "측량업자"라 한다) 또는 수로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로사업자"라 한다)가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7]

1. 측량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사본

2. 수로사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사본

제12조(안전관리계획의 검토 의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9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총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② 2015경북문화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가록 및 제20조제1호가록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2의 기술능력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록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으로 한다.

제23조의2제6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⑦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로,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감리원의 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수"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4호의2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79조제2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8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86조제8항, 제87조제2항·제5항, 제91조제2항제3호 및 제103조제4항·제5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06조제2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⑭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16>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건축감리전문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한다.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20>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2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2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한다.

<24>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25>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으로서 당해 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2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한다.

<2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한다.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한다.

<3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정해진 감리원(監理員)"을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監理員)"으로 한다.

제74조제6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0호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9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0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3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로 한다.

<3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34>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35>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36>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제19조제1항제5호가록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37>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2014.7.16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6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4.11.11 제25716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해양수산청

⑨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 칙[2015.7.6 제263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기본 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6.1.12 제268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반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건설사고로 인하여 업무정치처분이나 벌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준공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2016.5.17 제271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②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의2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을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⑤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9.22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부 칙[2016.11.29 제27619호(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11.29 제2762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 별 표 서 식

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별표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별표3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별표4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별표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별표6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별표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별표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별표10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

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